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·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~) 실시 예정

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

환경부령안

제1조(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호, 제5호, 제7호, 제11호,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(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

를 삭제한다.

제5조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(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14호를 삭제한다.

제8조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9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3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20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: 2014년 7월 29일	<u><삭 제></u>
2.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·보존 방법 등: 2014년 7월 29일	<u><삭 제></u>
3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: 2014년 7월 29일	<u><삭 제></u>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9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4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1의2.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<u>2.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·보존 방법 등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<u>3.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4. 삭제	
<u>5. 제35조에 따른 유출차단시설·집수시설 등의 설치 또는</u>	<u><삭 제></u>

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

장기간: 2014년 7월 29일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4조제2항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: 2014년 7월 22일	<삭제>
2의2. (생략)	2의2. (현행과 같음)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·등록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: 2014년 7월 22일	<삭제>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: 2014년 7월 22일	<삭제>
8. ~ 10. (생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

<u>11.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</u> <u>른 샘플등의 취수량 보고 시</u> <u>제출서류·제출시기 및 먹는</u> <u>샘물등의 수입실적 보고 시</u> <u>제출서류: 2014년 7월 22일</u>	<u><삭 제></u>
<u>12.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먹는</u> <u>샘물등, 수처리제, 정수기 또</u> <u>는 그 용기의 제조신청 시 제</u> <u>출서류: 2014년 7월 22일</u>	<u><삭 제></u>
<u>12의2. 제31조제1항에 따른 먹</u> <u>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:</u> <u>2019년 1월 1일</u>	<u><삭 제></u>
13. ~ 15. (생 략)	13. ~ 15. (현행과 같음)

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1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: 2014년 7월 1일</u>	<u><삭 제></u>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9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7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1.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: 2014년 7월 17일	<u><삭 제></u>
2. 제23조의4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: 2014년 7월 17일	<u><삭 제></u>
3.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: 2014년 7월 17일	<u><삭 제></u>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29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·수입등 허가신청시 제출서류: 2014년 7월 17일	<u><삭 제></u>
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제47조제3항에 따른 박제업 자의 변경등록사항: 2014년 7 월 17일	<u><삭 제></u>
10. ~ 12. (생 략)	10. ~ 12. (현행과 같음)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1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41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1의2.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<u>2.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·보존 방법 등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<u>3.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4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(제14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)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8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14.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·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</u>	<u><삭제></u>

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규칙 일부개정령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1의2. 제8조의12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<u>2. 제8조의13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와 기록·보존 방법 등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
<u>3.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: 2014년 7월 29일</u>	<u><삭 제></u>